
Policy and Law Report _Vol.12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3.28.~ 2022.04.03) -

April 5,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여,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을 검토하였음 * 17개는 조치완료(13개) 및 정상화(4개), 8개는 '22.3월말(7개), 6월말(1개) 기한 도래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①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②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 유연화 조치 종료시 ① (단계적 정상화)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22.6월)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21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 준수중 <table><tr><th colspan="7"><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th></tr><tr><th></th><th>~'22.6월</th><th>7~9월</th><th>10~12월</th><th>'23.1~3월</th><th>4~6월</th><th>7월~</th></tr><tr><td>규제비율</td><td>85% (-)</td><td>90% (+5%p)</td><td>92.5% (+2.5%p)</td><td>95% (+2.5%p)</td><td>97.5% (+2.5%p)</td><td>100% (+2.5%p)</td></tr></table> ② (즉시 정상화)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 * 3개월 유예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table><tr><th colspan="2"><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th></tr><tr><td>① 은행 통합 LCR 완화*</td><td>'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td></tr><tr><td colspan="2">*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85%로 인하</td></tr><tr><td>② 은행 외화 LCR 완화*</td><td>'22.3월말 → '22.6월말(종료)</td></tr><tr><td colspan="2">*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td></tr><tr><td>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td><td>'22.3월말 → '22.6월말(종료)</td></tr><tr><td colspan="2">*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td></tr></table>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22.6월	7~9월	10~12월	'23.1~3월	4~6월	7월~	규제비율	85% (-)	90% (+5%p)	92.5% (+2.5%p)	95% (+2.5%p)	97.5% (+2.5%p)	100% (+2.5%p)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① 은행 통합 LCR 완화*	'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85%로 인하		② 은행 외화 LCR 완화*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2022-03-30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22.6월	7~9월	10~12월	'23.1~3월	4~6월	7월~																															
규제비율	85% (-)	90% (+5%p)	92.5% (+2.5%p)	95% (+2.5%p)	97.5% (+2.5%p)	100% (+2.5%p)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① 은행 통합 LCR 완화*	'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85%로 인하																																					
② 은행 외화 LCR 완화*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2.3월말 → '22.6월말(종료)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⑦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12월 평가 → '22.3월 평가(종료)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 금융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21.12.28)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 개시함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직무규칙』 주요내용 • (수사개시) 증선위 고발·통보사건 등 • (수사절차)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영장의 신청·집행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 관련 준수사항 • (수사종결)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수사 종결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사항을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주요 운영계획으로는 ①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음 ②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함 ③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기로 함	2022-03-30

부처	내용	일시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①~④) 및 절차> <pre> graph LR A[한국거래소 심리] --> B[사건 분류 (증권위)] B --> C1[자본시장 조사단 조사] B --> C2[금융위 금감원 공동조사] B --> C3[금감원 조사] C1 --> D1["① 증선위 의결 ②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D1 --> E[검찰 직접 수사 또는 특사경 수사 지휘] E --> F1[자본시장 특사경 (7인)] C2 --> F2[금융위 특사경 (7인)] C3 --> D2["③ 조사 중 수사 전환"] D2 --> D3["④ 금융위 특사경 자체 인지"] D3 --> G[수사 심의위] G --> F3[금감원 특사경 (15인)] </pre>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함 기본 방향으로는 ①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②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①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②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 재무제표 심사·감리 신속처리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재무정보 적기제공 및 회계점검 확대 ③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④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2022-03-2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3. 31. 시행, 별지 제40호의4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3. 1. 1. 시행 예정)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와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손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서식과 관련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3-31
금융 위원회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3. 31. 시행, 제19조의9의 개정 규정은 2022. 4. 1.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8667호, 2021. 12. 31. 공포, 2022. 4. 1. 시행)됨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중소기업팩토링을 위한 중소기업자별 매출채권 매입 한도를 100억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투자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9조의8제3항 후단 삭제, 제19조의9 신설) * 중소기업팩토링: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제1항) **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주식 인수 등의 방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9호 및 제23조의4제1항)	2022-03-31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2021. 10. 19 공포, 2021. 4. 2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안 제2조 및 제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확정하도록 함 ②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함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심의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 등 (안 제12조 및 제13조) -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등은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함 ④ 데이터거래사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을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함 -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및 데이터 거래 관련 법·제도 교육 등을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정함 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안 제30조부터 안 제36조까지)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알리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2022-03-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함 재입법예고 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안 (제22조) - 데이터 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관련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22조 제1호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를 새로이 추가 ② 데이터품질인증 기관의 대상 및 기준 (조문 삭제) - 관계기관 협의 결과,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 기준 등의 조문 추후 마련 ③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소속 변경안 (제30조)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소속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 ※ 의견 제시기간 : 3/28(월)~3/31(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로 제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방송사업 변경허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② 현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이 필요한 방송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합병을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3항제5호) ④ 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과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을 폐지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제4항)	2022-03-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에 재난예방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 104조의2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3/31(목)~5/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충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충간바닥의 바닥충격을 차단성능 기준과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충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정기관과 다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 마련 (안 제60조의 8 신설) ③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 (안 제60조의 9 신설) ④ 성능검사기준, 세대 선정 및 비율, 결과 통보, 수수료 등 성능검사의 방법 마련 (안 제60조의 10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3/28(월)~5/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	2022-03-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하여 적기에 적절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 (안 제86조제1항)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국토부에서 조사함에도 행정처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적기에 적정수준의 처분에 한계가 있어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음 ※ 의견 제시기간 : 3/29(화)~5/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제출	2022-03-2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료 허용하는 한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안 제15조의4) -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 (안 제4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022-03-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 (안 제47조의8)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안 제49조) -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 의견 제시기간 : 3/30(목)~4/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로 제출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등 (안 제9조제30항·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을 정함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 (안 제12조제2항제6호)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022-03-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④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 (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⑤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 (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3/31(목)~4/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8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신설)	2022-03-28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2인)」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약 56%를, 경유의 경우 약 47%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106조의11 신설)	2022-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u>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대규모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및 제24조의2 신설)	2022-03-29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022-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반면 「전기통신보호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의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②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 (안 제83조의4 신설) ③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공정한 사법절차의 방해·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함 (안 제83조의5 신설)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현행 법령 체계상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도서·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등)	2022-03-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u>」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상권 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 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2022-03-29
보건복지 위원회	• 「<u>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u>」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이나, 여러 항만의 여객 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 제공시설 등에는 연중무휴 점포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점포가 없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과거(2015년)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공항과 항만시설 또한 의료취약지역 문제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3항 등)	2022-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 「<u>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u>」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위해 의약품의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그 처분에 관한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1조의3 신설)	2022-03-28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법사위	4/4(월) 10:00	전체회의(타위법 심사)	
국회사무처	4/8(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3호 발간	
국회도서관	4/7(목) 14:00	제25차「AI와 국회포럼」실시 - 주요국의 AI 관련 국가전략 현황	국회도서관 1회의실
	4/5(화)	현안입법 알리기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조사처	4/4(월) 14:30	전문가 간담회 -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방안 (김우찬 고려대 교수)	ZOOM
	4/6(수) 15:00	전문가 간담회 - 제1차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방법론	ZOOM
	4/7(목) 10:00	전문가 간담회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향	ZOOM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4(월) 14:00	환경과 경제의 상생, 그린뉴딜 -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5(화) 14:00	뇌산업 육성 발전전략 정책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5(화) 14:00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사업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송석준, 장경태 의원실, 국토교통부	의원회관 대회의실
4/7(목) 10:00	2022 세계경제 추이 및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재외동포재단 2022년 공동세미나	이원욱 의원실, 재외동포재단 외	의원회관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2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1(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82호 발간	
국회도서관	3/29(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9호 발간 -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3/29(화)	현안입법 알리기 -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절차적 규정 마련	
예산정책처	3/29(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 발간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등	
입법조사처	3/30(수) 07:30	제15회 「NARS 시선과 논란」 개최 -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갈등,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8(월) 10:00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	김한정, 김경협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8(월) 14:00	차기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9(화) 14:00	국산 의료기기 수출확대를 위한 유럽 신의료기기법 MDR 대응 전략 세미나 [첨부1], [첨부2]	이주환 의원실, 스마트의료기기진흥재단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파트너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